

보도시점 2024. 11. 20.(수) 09:00 (2024. 11. 20.(수) 석간)

중증 장애아동의 부모는 육아휴직 1년 6개월로 연장

- ‘육아지원 3법’ 개정에 따른 「남녀고용평등법», 「고용보험법」 및 「근로기준법」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(11.20.~12.30.)

고용노동부(장관 김문수)는 남녀고용평등법, 고용보험법 및 근로기준법 하위법령 일부개정령안을 11월 20일부터 12월 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.

지난 9월 26일 국회를 통과한 육아지원 3법(남녀고용평등법, 고용보험법, 근로기준법)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임신초기 유·사산 휴가를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.

① 내년 2월 23일부터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육아휴직기간이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되는데, **한부모나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**는 이러한 조건 없이 6개월 육아휴직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. 이때 중증 장애아동은 「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」에 따른 “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(중증)” 아동을 말한다.

② 출산전후휴가는 현행 90일인데 앞으로 출생 후 **미숙아**가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하는 경우에는 100일로 늘어난다. 이때 미숙아는 임신 37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체중이 2.5kg 미만인 영유아(모자보건법 시행령상 미숙아)로서 출생 후 24시간 이내에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한 경우를 말한다.

③ 현재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임신 12주 이내 혹은 임신 36주 이후에 사용할 수 있는데, 앞으로 **고위험 임신부**는 임신 기간 전체에 걸쳐 사용할 수 있다. 이때 고위험 임신부는 다태임신, 당뇨병, 출혈 등 고위험 임신부 의료비 지원사업(복지부)의 대상인 19가지 위험 질환을 진단받은 임신부이다.(참고1)

④ 고령 임신부 등의 증가로 유·사산이 늘어나는 추세를 감안하여 임신 후 11주 이내의 **임신초기 유·사산 휴가** 기간을 현행 5일에서 10일로 확대한다.

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“육아지원 3법이 개정되어 내년 2월 23일 시행 예정”이라며, “부모가 함께, 부담 없이 일·육아 지원제도를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한편, 임신·출산·육아 과정에서 지원이 더욱 필요한 분들을 세심하게 살펴 제도를 확대해 나가겠다”라고 밝혔다.

담당 부서 육아휴직	통합고용정책국 여성고용정책과	책임자	과 장	조정숙 (044-202-7470)
		담당자	사무관	김신영 (044-202-7476)
담당 부서 고용보험	고용서비스정책관 고용보험기획과	책임자	과 장	오은경 (044-202-7347)
		담당자	서기관	김용주 (044-202-7352)



참고 1**고위험 임신부 관련 19가지 위험질환**

번호	질환명	질병코드
1	조기진통	O60
2	분만관련 출혈	O67, O72
3	중증 임신중독증	O11, O14, O15
4	양막의 조기파열	O42
5	태반조기박리	O45
6	전치태반	O44, O69.4
7	절박유산	O20.0
8	양수과다증	O40
9	양수과소증	O41.0
10	분만전 출혈	O46
11	자궁경부무력증	O34.3
12	고혈압	O10, O13, O16
13	다태임신	O30, O31
14	당뇨병	O24
15	대사장애 동반 임신과다구토	O21.1
16	신질환	N00-N23, N00-N08, N10-N16, N17-N19, N20-N23
17	심부전	I00-I52, I00-I02, I05-I09, I10-I15, I20-I25, I26-I28, I30-I52
18	자궁 내 성장 제한	O36.5
19	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	O23.5, O34.0, O34.1, O34.4, O34.8, O41.1

육아지원 3법 개정 주요내용

육아휴직

	현행	개선
기간 및 사용	<p>최대 1년</p> <p>3번에 나눠 사용 (분할 2회)</p>	<p>최대 1년 6개월 *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사용 시 또는 한부모 또는 중증장애아동부모</p> <p>4번에 나눠 사용 (분할 3회)</p>

배우자 출산휴가

	현행	개선
기간	10일	20일
정부지원	중소기업 근로자 5일	중소기업 근로자 20일
사용	2번에 나눠 사용 (분할 1회)	4번에 나눠 사용 (분할 3회)
기한	출산 후 90일 이내 청구	출산 후 120일 이내 사용

육아기 근로시간 단축

	현행	개선
대상 및 기간	<p>자녀 연령이 8세 이하</p> <p>최대 2년 *1년 + 육아휴직 미사용기간</p>	<p>12세 이하</p> <p>최대 3년 *1년 + 육아휴직 미사용기간 X 2</p>
사용	<p>최소 3개월 이상</p> <p>연차 산정 시 단축 근로시간 미포함</p>	<p>최소 1개월 이상</p> <p>단축 근로시간도 포함</p>

육아지원 3법 개정 주요내용

임신기 근로시간 단축

	현행	개선
사용	임신 12주 이내, 36주 이후에 신청 가능	임신 12주 이내, 32주 이후에 가능 *고위험질한 등 의사진단이 있는 경우는 전기간
사용	연차 산정 시 단축 근로시간 미포함	단축 근로시간도 포함

출산전후휴가

미숙아 출산 시 기간	현행	개선
	90일	100일

난임치료 휴가

	현행	개선
기간	연간 3일 (1일 유급)	연간 6일 (2일 유급)
정부지원	정부 지원 없음	중소기업 근로자 2일
비밀유지	해당없음	사업주 비밀누설금지 의무 신설

